

실험·실습 기자재 선정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24.05.30. 개정 2024.12.0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혜전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실험·실습 기자재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실험·실습실 환경개선 및 기자재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과과정과의 연계 및 활용성
2.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
3. 가격의 적정성
4. 설치 장소의 적합성
5. 계열(학과)별 형평성
6. 실습환경개선의 적합성<신설 2024.12.05.>

제3조 (구성)

- ① 위원은 교무처장, 총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은 총장이 겸임하고 부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제4조 (임기)

-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이 궐위 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대학 내 행정조직 및 그 밖의 기관의 책임자를 위원회에 배석시킬 수 있다.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교무팀 직원으로 한다.

제8조 (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부 칙(2024.05.3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0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2.0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2월 05일부터 시행한다.